

[정신건강의학과 윤리강령]

1. 정신건강의학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바지하는 의학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한다.
2. 환자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며 동반자적 환자-의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선호에 따라 합리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기준을 지키고 정직하여야 하며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존경과 신의로 대하여야 한다.
4. 전문가로서의 자기계발에 힘쓰고 평생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최신의 의학지식을 습득하며, 정신의학의 과학적 진보를 위해 노력한다.
5. 정신질환에 의하여 환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 및 후견인과 의논하며, 가능하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 치료는 항상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6.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치료 외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환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정신감정 등 평가를 의뢰 받을 경우, 평가의 목적, 결과의 활용, 그리고 이를 통해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피평가자에게 알려준다.
8.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공익의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추정을 사실인 것처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9.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소외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10. 모든 연구는 과학의 규범에 따라 시행한다. 연구수행에 있어 국가적, 국제적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연구의 피험자로서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1. 학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학회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윤리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 윤리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직무]

- ① 위원회는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업무를 한다.
- ② 위원회는 모든 회원들이 윤리적 의무와 전문직업성을 갖고 환자의 인권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교육한다.
- ③ 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한다.
- ④ 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직면한 진료와 연구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 ⑤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장은 현임, 전임 및 차기이사장과 현임, 전임 및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총 15인으로 하며, 위원 중 9인은 학회 회원, 6인은 학회 회원이 아닌 사회 각계 인사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 회원인 위원 중 1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대표(이하 "전공의 대표")로 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2년마다 위원의 1/3이 교체되도록 한다. 단, 전공의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이사장이 추천한다. 보선된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⑦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 ⑧ 위원장과 위원 중 위원회의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주거나 기타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이사장의 제청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2장 자율규제 규정

제4조 [정의와 목적]

- ① 모든 회원은 환자와 사회, 동료 회원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품위와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
- ② 환자와 동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포함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
- ③ 자율규제는 법률적 행위가 아닌 윤리도덕적 징계이며, 정신건강의학의 직업적 고결함을 유지하고 환자와 동료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 ④ 이러한 자율 규제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노력한다.

제5조 [징계 신청]

- ①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신청은 환자, 환자 보호자,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이나 단체가 할 수 있다.
- ② 징계 대상자는 학회 회원에 한한다.
- ③ 징계 신청을 한 사람은 제소인이라 하고 징계 신청의 대상자는 피제소인이라 칭한다
- ④ 징계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피제소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제소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소인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법적 소송을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
- ⑥ 징계 신청은 실명으로 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피제소인을 포함한 외부인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제소인의 신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⑦ 징계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원회가 회원의 중대한 윤리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⑧ 윤리 위반 행위는 발생한 지 10년 이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10년이 넘은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단,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가해진 비윤리적 행위인 경우 피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10년 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 [사전 조사]

- ① 징계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2인의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
- ② 조사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조사위원은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정한 조사 활동에 관한 서약서, 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⑤ 조사위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조사활동 결과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장은 이를 제소인에게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규제 절차를 종료한다.

- ⑦ 제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새로이 조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재조사에서도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다시 제소인에게 통보하고 규제 절차를 종료한다.
- ⑧ 조사활동 결과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위원장은 청문심사 절차를 개시하며 이 사실을 피제소인에게 통보한다.

제7조 [청문심사회 구성]

- ① 피제소인의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장은 청문심사회를 구성한다.
- ② 청문심사회는 위원장이 위촉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최소 3인은 윤리인권 위원이어야 한다.
- ③ 청문심사위원은 청문심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정한 조사 활동에 관한 서약서, 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문심사회 출석 요구]

- ① 위원장은 피제소인에게 청문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② 서면 출석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윤리 위반 행위와 해당 윤리 강령
 - 나. 청문심사회 장소 및 일시
- ③ 피제소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가. 청문심사회에 불출석할 권리
 - 나. 청문심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다. 청문심사회에 증인을 신청할 권리

제9조 [청문심사회 진행]

- ① 청문심사회 의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 ② 청문심사회는 필요시 제소인, 조사위원,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 ③ 청문심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소인, 피제소인 및 증인의 개인정보와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청문심사회는 판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회수 제한없이 개최할 수 있으나 징계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청문심사절차를 완료하고 보고서 및 징계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문심사보고서 및 징계권고]

- ① 청문심사 절차를 마친 후 청문심사회는 표결에 의해 윤리 위반 여부와 윤리인권위원회에 권고할 징계의 수준을 정한다.
- ② 표결은 청문심사위원 전원이 참가하여 다수결로 정한다.